

『긴급절전 수요조정제도』 안내

1 개요

사전에 고객과 약정을 체결하고, 한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자율적으로 부하를 감축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불이행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제도

- 시행시기 : 예비력 3,500MW 미만(주의단계)으로 수급운영상 필요 시
- 시행안내 : 1시간 전 시행예고, 종료 30분 전 종료예고 (1일 최대4시간)

2 약정 대상 : 500kW 이상 감축 가능한 산업·일반·교육용 고압 고객

- A형 : 전용공급선로 공급고객으로 3,000kW 이상 또는
고객기준부하의 20% 이상 감축
- B형 : 전용공급선로 또는 일반공급선로 공급고객으로 500kW 이상 감축

3 약정기간 : 약정체결일 다음 날부터 1년 (1년마다 갱신·재약정)

4 지원금 및 위약금

F1-1D-20-11-02-B0 / 18201844 / 2024-10-10 11:36:49

기본지원금	▶ 약정량(kW) × 기본지원단가(500원/kW) ※ 연 1회(12월) 일괄 지급				
실적지원금	▶ 수요조정전력(kW) × 실적지원단가(원/kW)				
	약정유형	약정이행률별 실적지원단가(원/kW)			
		60%미만	60%이상 ~80%미만	80%이상 ~100%미만	100%이상
	A형	0원	1,500원	2,000원	2,500원
B형	0원	1,800원	2,400원	3,000원	
위약금	▶ 약정량(kW) × 기본지원단가 × (위약횟수 ÷ 시행횟수) - 시간대별 약정이행률 50% 미만 시 연간 기본지원금 한도 내에서 차감				

※ 약정유형 A형 고객은 '25년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부터 긴급 부하조정' 대상에서 제외 예정
* 긴급 부하조정 : 수급경보 심각단계(예비력 1,500MW 미만) 발령 시 전력거래소 지시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선로별 부하차단 시행

5 문의처 : 한국전력 대구본부 에너지효율부 (☎053-350-2457)